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55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 민형배・이개호・김현정

주철현 · 김문수 · 양부남

김동아 • 박지원 • 문정복

소병훈 · 정동영 · 이성윤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,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, 관련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이에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19 조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9조(비밀엄수의 의무) 다음	제119조(비밀엄수의 의무)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	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
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	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
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	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
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	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
는 아니 된다. <u><단서 신설></u>	는 아니 된다. <u>다만, 「국정감사</u>
	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	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
	있어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
	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
	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	<u>다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